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	-----

제출년월일 : 1996. 11.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경계 편입지구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노후 불량주택개량 용자사업의 불합리한 용자조건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노후불량주택개량 용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인 3인으로 하던것을 1인으로함(안제20조제2항)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3인”을 “1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자금의신청)①(생략)	제20조(자금의신청)①(현행과같음)	제20조(자금의신청)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② -----	② -----	
거주하는자 <u>3인</u> 이상이 연대보증	----- <u>1인</u> -----	----- <u>1인</u> -----	
한 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또는	-----	-----	
시장이 따로정하는 서류를 첨부	-----	-----	
하여야 한다.	-----	-----	